
2024년 산학협력 우수기업 선정계획

2024. 1.



교 육 부
(지역인재정책관)

목 차

I. 추진배경	1
II. 세부추진 계획	2
① 기본방향 및 사업추진 절차	2
② 인증신청	3
③ 인증기관 심사 및 선정	4
④ 인증기관 시상 및 인센티브 제공	6
⑤ 사후 관리	7
⑥ 홍보계획	8
III. 향후 일정	8

I. 추진배경

□ 목적

-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기관 중 우수기업을 선발하여 다양한 혜택*을 제공함으로써 대학과 기업 간 협력 촉진

* 여신금리 우대, 각종 수수료 할인 등 금융혜택 지원, 정부지원사업 가점 등 부여

< 산학협력 마일리지 개요 >

- 산학협력 활동* 후 참여 실적에 따라 '대학'과 '기업'에 마일리지를 부여하고, 적립한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산학협력 관련 지원사업에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

* ①대학생 현장실습, ②산학협력 교육과정, ③학생 채용, ④산업체 과제 수행, ⑤기술이전, ⑥공용장비 활용, ⑦산학협력 장학금·발전기금 기부 등

□ 추진경과

-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 시범 운영('15.) 및 확대 추진('16.~)
 - ※ 일반대 LINC 참여대학의 가족회사 대상 시범 추진('15) → 전체 대학 현장실습 참여기업('16.~)
- '산학협력 마일리지 활성화 방안' 발표(사회관계장관회의, '21.10.13.)

[참고] 산학협력마일리지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

적립분야 확대	현장실습 → 산학협력 전 분야(①현장실습, ②산학협력 교육과정 운영, ③학생채용, ④산업체 과제 수행, ⑤기술이전, ⑥공용장비 활용, ⑦산학협력 장학금 및 발전기금)
적립방식 개선	기업만 적립 → 기업-대학 공동 적립
활용영역 확대	1개 사업(산자부) → 16개 사업(산자부, 고용부, 중기부, 부산시 등)
우수기업 인증지원 (신설)	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산학협력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센티브 부여

- 산학협력 마일리지 세부 시행계획 수립('22.1월)
- 산학협력 우수기관(기업) 선정계획 수립('22.12월) 및 선정결과 발표('23.4월)

□ 마일리지 적립현황 ('24. 1. 31.기준)

기업			대학		
적립기관	마일리지	적립분야별 현황	적립기관	마일리지	적립분야별 현황
14,552社	12,490,376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1개) 12,834社 • (2개) 1,320社 • (3개 이상) 305社 	124교	12,504,976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1개) 31교 • (2개) 17교 • (3개 이상) 76교

II. 세부추진 계획

1 기본방향 및 사업추진 절차

□ 기본방향

- 산학협력 우수기업을 100개 내외 선정·인증 후 접수결과, 운영 성과 등을 분석하여 선정규모 확대 및 인증혜택 지속 발굴 추진

□ 운영체제

- (교육부) 산학협력 우수기업 인증 사업 총괄
- (대한상공회의소) 산학협력 우수기업 인증 사업 주관·운영
- (운영협의체) 산학협력 우수기업 인증 결과 조정 및 인증 결정·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(총 14명, 정부, 지자체, 산업체, 학계 등 관계자로 구성)

□ 사업추진 절차

구분	주요내용	수행기관
계획수립 및 사업공고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우수기업 선정계획 수립 • 사업 공고 및 사업설명회 개최 	교육부, 대한상공회의소
↓		
신청서 제출 및 접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제출 	참여 희망 기업→ 대한상공회의소
↓		
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실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평가위원회 구성 • 자격요건 구비여부 등 확인 	대한상공회의소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서면평가 	평가위원회
↓		
운영협의체 개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평가결과 최종 심의 등 • 사업관리·운영 심의 자문 	운영협의체
↓		
선정결과 보고 및 승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선정결과 보고(대한상의→교육부) • 선정결과 승인(교육부→대한상의) 	교육부, 대한상공회의소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최종 선정기업에 선정결과 통보 	교육부, 대한상공회의소
↓		
사후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인증기업 산학협력 활동 현황 모니터링 	교육부, 대한상공회의소

□ 대상기관

- 대학생 현장실습 등 산학협력 활동 실적이 있는 기업으로서 접수 마감일 기준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 실적이 있는 기업
 - ※ 기관별 적립실적은 산학협력 마일리지 플랫폼(www.muic.or.kr)에서 확인 가능

<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분야 및 기준 >

분야	분야별 활동	적립기준
인력양성	대학생 현장실습	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실습지원비 1만원당 1마일리지
	산학협력 교육과정	기업부담 경비(등록금 지원 등) 1만원당 1마일리지 ※ 계약학과, 주문식 교육과정, 캡스톤디자인 운영 관련 경비
	학생채용	산학협력 교육과정 이수학생 채용 1명당 300마일리지 ※ 대학생 현장실습, 계약학과, 주문식 교육과정, 캡스톤 디자인
연구개발	산업체 과제 수행	(산업체입금금액/10,000만원) ^{0.6} ×1000마일리지 ※ 산학공동연구·위탁연구 시 대학(산단)에 납부한 연구비
기술이전	기술이전	(산업체입금액*/5,000만원) ^{0.7} ×1000마일리지 *대학(산단)명의 기술이전계약 체결에 따른 기술이전료
인프라 등	공용장비 활용	(산업체입금액*/5,000만원) ^{0.7} ×1000마일리지 *대학(산단)보유 공용장비 활용 후 입금한 사용료
	산학협력 장학금 등	(산업체입금액*/1,000만원) ^{0.56} ×1000마일리지 *기업이 학생·대학에 기부한 장학금·발전기금 등

- 단,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분 받은 사업장,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관 등 신청 제외 기관에 해당될 경우 신청 불가

참고

신청 제외 기관(최근 3년(공고일 기준)) 이내

-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은 사업장
-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체불과 관련한 명단 공표 사업장
-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명단 공표 사업장
- 국세기본법, 관세법, 지방세징수법 등에 의거 고액·상습 체납 등과 관련한 명단 공표 사업장
-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명단 공표 사업장
-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2회 연속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(단, 신청일 이전 장애인 의무 고용을 충족한 경우 제외)에 해당 없음
-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언론보도 등 또는 소송·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우수기업 인증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장

□ 신청 및 접수

- (사업공고) 교육부 및 대한상공회의소 공동으로 사업 공고
 - ※ 교육부, 산학협력 마일리지 홈페이지 공지,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
- (신청 및 접수)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접수처를 운영하고 신청서 등 자료는 전자메일로 제출
 - ※ 접수 마감일을 초과하여 제출한 기관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

□ 온라인 사업설명회

- 기업 담당자가 시공간적 제약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을 위한 심사지표, 신청서 작성방법 등 설명자료 제작

3 인증기업 심사 및 선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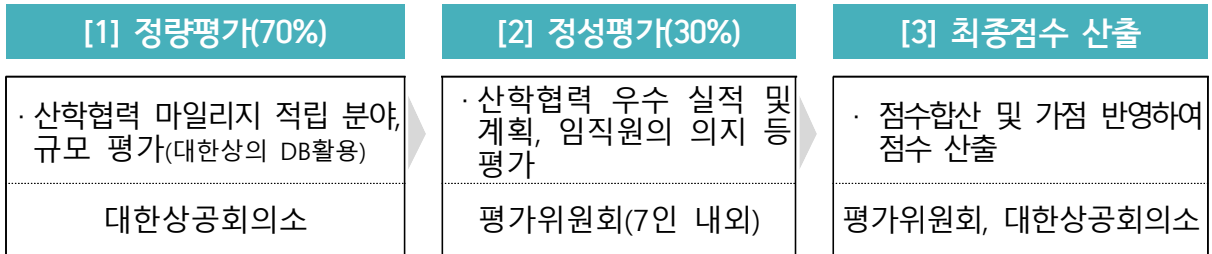
□ 인증기관 심사

- (심사지표) 산학협력 활동 성과 및 활동계획 2개 영역, 6개 지표로 구성

평가영역	평가지표	평가방법	배점																				
산학협력 활동 성과 (80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산학협력 활동 분야의 다양성 ※ 총 7개 적립분야 중 ▲3개 이상 (10점) ▲(2개) 8점 ▲(1개) 6점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 규모(단, 접수마감일 기준 신청한 활동까지 인정) 	정량	10점																				
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상위 10%이내</th> <th>20%</th> <th>30%</th> <th>40%</th> <th>50%</th> <th>60%</th> <th>70%</th> <th>80%</th> <th>90% 초과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점수</td> <td>45~50</td> <td>40~45</td> <td>35~40</td> <td>30~35</td> <td>25~30</td> <td>20~25</td> <td>15~20</td> <td>10~15</td> <td>0~1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상위 10%이내	20%	30%	40%	50%	60%	70%	80%	90% 초과	점수	45~50	40~45	35~40	30~35	25~30	20~25	15~20	10~15	0~10	정량	50점
	구분	상위 10%이내	20%	30%	40%	50%	60%	70%	80%	90% 초과													
	점수	45~50	40~45	35~40	30~35	25~30	20~25	15~20	10~15	0~10								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산학협력 마일리지 거래소 사용 실적 ※ 사용실적별 1점, 최대 10점 	정량	10점																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산학협력 분야 우수 활동 실적 	정성	10점																					
산학협력 활동 계획 (20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임직원의 산학협력 활동 추진 의지 	정성	10점																		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산학협력 분야 활성화 계획(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등) 		10점																				
가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총장 추천기관(2점) 지역대학 졸업생을 2023년에 채용한 기업(5점) ※ 채용규모별로 가점 차등 적용 	총점에서 가점																					

- (심사절차)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지표에 따라 서면 심사
 - (자격요건 확인 : 대한상의) 신청자격, 필수제출 서류 구비 여부 등 확인(신청자격 등 자격요건 미흡기관 평가 제외)
 - ※ 사업계획서를 제외한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등의 경우, 서면평가 전 보완요청 가능

- (정량평가) 산학협력 마일리지 플랫폼을 활용하여 산출·확인
 ※ 신청기관이 선발규모의 1.3배 이상일 경우 정량평가에서 1.3배수 내외 선정
- (정성평가) 각 기관이 제출한 서류 내용을 심사(서면), 지표별 평가위원의 점수(10점 척도)의 산술평균값을 반영



※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

□ 평가위원회 구성

- (구성) 접수결과 신청한 기관의 규모(대기업, 중소기업 등) 등을 감안하여 패널 수를 조정하고, 패널별 평가위원은 7인 내외로 구성
- (평가위원 위촉 기준) 평가위원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학문분야, 전문성, 사업이해도 및 소속기관 등을 고려하여 위촉
- 단, 평가 대상 기관 소속인 자는 평가위원 위촉 불가

참고	평가위원 자격 요건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대학) 해당분야 조교수(전임강사) 이상인 자 · (연구소) 해당분야 연구개발(학술연구) 경력 5년 이상인 자 · (기업체 등)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

□ 인증여부 최종 확정

- (인증기준) 서류심사 및 가점 결과 점수 합산하여 100개 내외 기업 선정
 ※ 한 영역의 점수가 만점의 40% 미만일 경우는 총점에 관계없이 탈락
- (인증기업 선정)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산학협력 운영협의체 최종 심의를 거쳐 인증기업 선정
- (선정결과 통보)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신청기업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, 교육부는 교육부장관 명의로 인증서 수여
 ※ 인증서 발급대상 및 인증기관별 인증서 대장 작성·관리

4

인증기업 시상 및 인센티브 제공

□ 인증서 수여

- 선정된 우수기업에 인증서를 수여하여 유효기간 2년의 인증을 부여하고, 기업의 대외적 홍보 등에 인증서 활용



□ 인센티브 제공

- (금융혜택) 산학협력 우수 인증기업 대상 여신금리 우대, 각종 수수료 할인 등 다양한 금융혜택 제공
- (정부부처 사업 우대) 산학협력 우수 인증기업 대상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마일리지 차감없이 가점 부여 등 혜택 제공

참고		산학협력 우수기관 인증혜택		
[금융혜택]				
NH농협 은행		SC제일은행		
여신금리 0.1% 우대	외환거래 시 환율 우대	여신금리 0.3% 우대	중도상환 수수료 면제	송금 수수료 등 기타 수수료 할인
[가점 등 우대혜택 제공하는 정부부처 사업]				
사업(부처)	사업내용	우대혜택		
R&D보증 관련 (중기부)	아이디어 단계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에 걸친 R&D 금융 매칭을 통해 체계적인 R&D금융을 지원	기술평가 세부평가 등급 상향		
고용안정장려금 (고용부)	근로자의 일·생활 균형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, 유연 근무 등을 도입·활용하는 사업주 지원	중소기업 대상 가점(5점)		
고용유지지원금 (고용부)	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·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	무급고용유지조치 계획 승인 신청 시 가점 부여		
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(고용부)	일자리 창출규모 및 일자리의 질을 고려하여 으뜸기업으로 인증	선정 심사 시 우대		
일학습 병행학습기업 선정 (고용부)	학습기업이 학습근로자를 先채용 후 NCS기반 도제식 현장훈련 실시, 보완적으로 학교 등에서 이론교육(Off-JT) 실시하는 교육훈련제도	학습기업 선정 심사 시 가점(4점)		
클린사업장 조성 지원(고용부)	산재보험가입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·위험 요인 개선 자금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	가점 부여(2점)		

- 또한, 우수기관 인증여부와 관계없이 정부·지자체의 기업 지원 사업과 마일리지 제도를 연계하여 가점 부여 등 혜택 제공

5

사후관리

□ 사후 관리 및 사후 조치

- (사후관리) 인증 이후 기관의 비위 사실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인증자격 유지 여부 결정 등 사후조치
 - ※ 산학협력 운영협의체 심의를 통해 조치여부 및 내용 결정
- (인증취소) 인증취소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관에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,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인증 취소
 - 단,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는 시정요구 없이 인증 취소
 - ※ 인증 취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제출 기회 부여(30일 이상)

참고

인증취소 사유

-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
- 기관 운영상의 이유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언론보도 또는 소송·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우수기업 인증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우수기업 인증일로부터 1년 이상 산학협력마일리지 적립 실적이 없는 경우

□ 사업 평가 및 의견 수렴

- 우수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산학협력 우수기업 인증에 대한 효과성 등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관들과 소통하고 의견 수렴
 -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인증에 사업의 평가지표, 평가방식 등의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차년도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

□ 우수기업 인증혜택 지속 발굴

- 대학-기업이 함께하는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우수기업 인증혜택 지속 발굴 추진

예시

유사사업 인증혜택 현황

- (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) 중기부 판로수출 지원사업 우대혜택, 수도권 지역 중과세 면제,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유예, 산업기능요원제도 등 가점 부여, 특히 연차등록 수수료 감면 등
- (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) 근로감독 면제, 조달청 공공입찰 시 가점, 기관 담당자 대상 연수 등
- (현장실습 선도기업 인증)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지원사업 및 조달청 공공입찰 가점, 금리우대,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료 할인 등

6

홍보계획

- (사업공고) 교육부 및 산학협력 마일리지 홈페이지 공지, 일간지 홍보, 대학 대상 공문 발송
※ '22년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 기관 대상으로 안내하여 신청 독려
- (온라인 사업설명회) 인증을 위한 신청서 작성요령, 심사지표 설명 등 동영상 자료 제공
- (우수사례집) 산학협력 우수기관 사례집을 배포하고 사업 성과를 공유하여 사업 참여 및 벤치마킹 유도

III. 향후일정

- 산학협력 우수기업 선정 신청 공고('24.2월)
- 산학협력 우수기업 신청 접수(~'24.3월)
- 산학협력 우수기업 선정 평가위원회 구성·운영('24.4월)
- 산학협력 우수기업 선정 평가('24.4월)
- 산학협력 마일리지 운영협의체 개최('24.5월)
- 산학협력 우수기업 선정결과 발표 및 인증서 수여식 개최('24.5월)